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어린이통학버스 주정차 예외적 허용 규정 마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4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07. 18.
3. 회 부 일 : 2024. 07. 1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주정차 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 등을 정하여 허용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됨.

그런데, 성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린 다수의 인원이 타고 내려야 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영유아가 승하차하고 이를 표시하는 장치가 작동 중일 때에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인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정차·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② (생략)<br><br><u>&lt;신설&gt;</u> |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br><br>③ <u>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제32조 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u> |

현행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횡단보도, 보도·차도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장소를 정차·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해당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정차·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은 해당 안전표지로 허용한 장소에서 주·정차를 하고 있으나,<sup>1)</sup>

어린이의 경우 승하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들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등을 승하차하고 해당 표시를 작동시키는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안전표지 위반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sup>2)</sup>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정차·주차 금지의 특례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생명 등 교통안전을 특별히 확보하기 위해 도입<sup>3)</sup>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법익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생략)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②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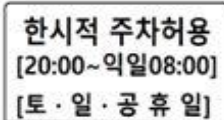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차. (생략)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나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20. 12월).

이미 현행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장소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도 정차·주차가 가능하고, 어린이의 승하차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문제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표지(별표 6: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표시)의 개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sup>4)</sup>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허용현황('24. 6월)>

| 구 분     | 어린이통학버스·어린이 승하차 |                                                                                     | 시간제 탄력 주정차 |                                                                                                                                                                               |
|---------|-----------------|-------------------------------------------------------------------------------------|------------|-------------------------------------------------------------------------------------------------------------------------------------------------------------------------------|
| 지 정(개소) | 2,602           |  | 890        | <br> |

※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표시)

문 의 처

02)6788-5344

4) 경찰청은 통학버스라는 이류만으로 주요 주·정차 금지 구간에 주·정차를 허용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현행 법령에 따른 안전표시로 허용한 구간에 통학버스 주·정차가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